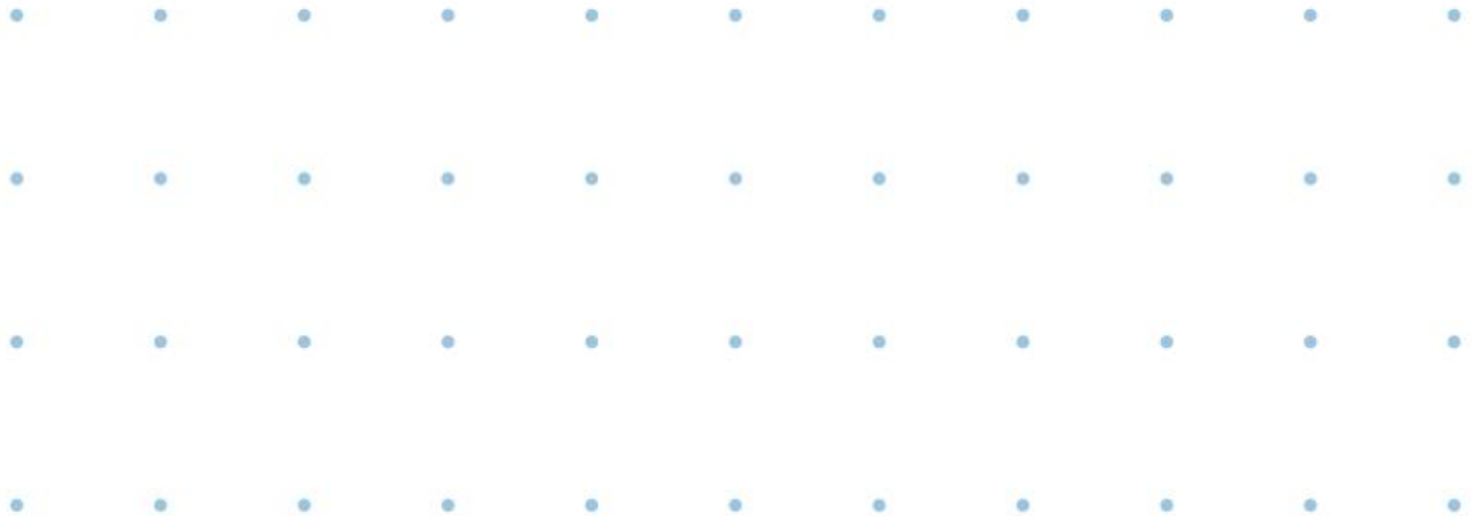




2018년 4월 1일
예비급여,자동차보험청구방법변경

예비급여

- 적용일자 : 2018년 4월 1일 진료분
- 적용대상 : 건강보험, 의료급여(한방포함)
- 적용내용 : 기존 선별급여가 예비급여로 확대시행
 - 변환전 :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본인부담율 50%, 80%
 - A : 100/50
 - B : 100/80
 - 변환후 : 모든질환 구분없이 본인부담율 30%, 50%, 80%, 90%
 - A : 100/50
 - B : 100/80
 - D : 100/30 (신설)
 - E : 100/90 (신설)

자동차보험 청구방법변경

- 적용일자 : 2018년 4월 1일 청구분
 - 적용대상 : 자동차보험
 - 적용내용 : 기존 보험사별 청구 -> 통합청구로 변경
 - 변경전 : 해당월 보험회사별로 청구
 - Ex) 해당월에 4개의 보험회사가 존재하는 경우
보험회사별로 4번 청구
 - 변경후 : 통합청구
 - Ex) 해당월에 4개의 보험회사가 존재하는 경우
전체 통합하여 1번 청구
- 접수증,심사결과통보서,이의제기통보서도 변경